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40호의3서식] <개정 2019. 12. 20.>

(앞쪽)

신고번호 제 호

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

신고인	시설명			
	성명(대표자)			
	주소	(전화번호:)		
시설 주소	(전화번호:)			
시설 종류	[ ] 바닥분수, [ ] 일반분수, [ ] 벽면분수(폭포 등), [ ] 실개천형, [ ] 연못형, [ ] 기타			
운영 주체	[ ] 국가, [ ] 지방자치단체, [ ] 공공기관 [ ] 민간 (시설구분: [ ]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, [ ] 관광지·관광단지, [ ] 도시공원, [ ] 체육시설, [ ] 어린이놀이시설, [ ] 공동주택, [ ] 대규모점포)			
시설 설치완료(예정)일			최초 가동개시(예정)일	
연중 운영기간	개월(월 ~ 월)		바닥면적	m^2
용수 종류	[ ] 수돗물(%), [ ] 지하수(%), [ ] 하천수, [ ] 계곡수(%), [ ] 기타( ) * 기타는 종류 명시,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			
저류조 용량	m^3		저류조 청소주기	
여과기 설치여부	[ ] 설치(종류: 처리능력: m^3/일), [ ] 미설치			
소독 방법	1. [ ] 염소계( ), [ ] 오존, [ ] 자외선, [ ] 기타( ) 2. [ ] 소독기 설치, [ ] 미설치		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·운영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20g/㎡)]

<변경사항>

일자	내용	확인

<처분사항>

일자	내용	확인